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14
----------	-----

2022. 3. 15.(수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3월 7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3월 15일

-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충청북도지사)

가. 제안사유

○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내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<조직개편에 분장사무 조정>

○ 이관

- 교육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: 기획관리실 → 과학인재국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각 행정기구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도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됨.
- 기존 기획관리실(장)의 “교육관련 업무의 총괄·조정 분장사무”를 과학인재국(장)의 분장사무로 조정하여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과학인재국 본연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호 중 “및 교육관련”을 “관련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14. 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·조정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·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획관리실)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삭제</p> <p>4. <u>의회 및 교육관련</u> 업무의 총괄·조정</p> <p>5. ~ 14. (생략)</p>	<p>제6조(기획관리실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 <u>관련</u> ----- ---</p> <p>5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과학인재국) 과학인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14.</u> (생략)</p>	<p>제8조(과학인재국) ----- -----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4. 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·조정</u></p> <p><u>15.</u> (현행 제14호와 같음)</p>

## 관련 법령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125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### 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) ① 시·도는 별표 1에 따른 시·도의 실·국·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실·국·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·국·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⑤ (생략)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### 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내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### ○ 작성자

행정국 행정운영과장 서동경